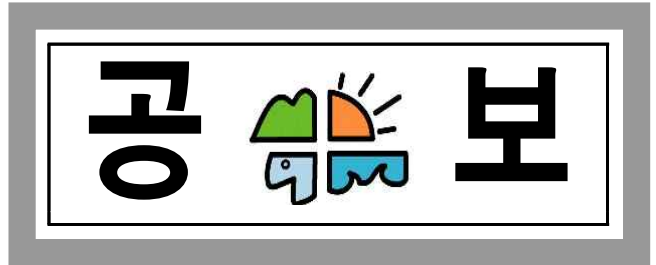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35호 2021년 7월 16일(금)

규 칙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 2

고 시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고시 4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결정(안) 공람·공고 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6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98호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임무) 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7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속 초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14.
2. 고시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2개 구간)
4. 도로명의 부여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부여신청 및 직권부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의견 제출기간이 지난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지명 등을 고려한 예비도로명 부여		14일 이상		도로명 부여 사유 등		도로명부여 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639-389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도면) 각 1부. 끝.

속초시 공고 제2021-73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A호선) 결정(안) 공람·공고

1. 속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A호선)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A호선) 결정(안) 공람·공고

나. 공고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호선) 신설

- 결정 조서(안)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A	7	국지 도로	269	대로1-1 대포 479-8철	대포 70-4도	일반도로	신 설

다. 공람기간: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라. 공람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033-639-2447)

마. 관계도서: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바.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불가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13.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공원: 만리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속초시장(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3. 사업시행지: 속초시 교동 767-39 일원(만리공원)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5. 05. 31.
5. 공고기간: 2021. 7. 13. ~ 2021. 7. 27.(15일간)
6.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협의기간 및 장소
 - 협의기간: 2021. 7. 13. ~ 2021. 7. 27.(15일간)
 - 협의장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3층 공원녹지과
8.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보상협의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공원녹지과(☎033-639-2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시송달 대상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송달사유	비고
				등기상주소	성명		
속초시 교동	796-8	전	23	속초시 교동 799-8	이*순	상속 미등기	